

2018년도 제27회 공인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26조에 따라 2018년도 제27회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최소합격인원

○ 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 : 300명

2. 시험시행 일정

구분	인터넷원서접수	시험장소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표
제1차 시험	4. 16(월) 09:00 ~ 4. 25(수) 18:00	인터넷원서 접수시 원서 접수지 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5. 19(토)	6. 20(수)
제2차 시험	7. 9(월) 09:00 ~ 7. 18(수) 18:0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9. 1(토)~9. 2(일)	10. 31(수)
제3차 시험	(2·3차 시험동시접수)	11. 5(월) 공고	서울	11.10(토)~11.11(일)	11. 21(수)

1차시험 특별 추가접수 시범실시 : 18. 5. 10(목) 09:00 ~ 5. 11(금) 18:00

- ※ 1차시험 특별추가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제한된 수용인원 범위내에서만 **선착순 접수**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환불이 불가함.**
- ※ 1차시험 특별추가접수는 원서접수만 추가로 접수받는 시스템으로 **면제서류제출 및 어학성적표의 제출기간, 어학성적 인정기준은 변동사항 없음.**
 - 면제서류 제출기간 : 4. 16. 09:00 ~ 4. 25. 17:00
 - 어학성적표 제출기간 : 4. 9. 09:00 ~ 4. 25. 17:00
 - 어학성적표 인정기준 :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정기원서접수마감일 (2018. 4. 25.)까지 성적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

구분	시험과목[배점]	출제범위
제1차시험 (5과목)	필수과목 (4)	①노동법(1) [100점] 「근로기준법」,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②노동법(2) [100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③민법[100점] 총칙편, 채권편
		④사회보험법 [100점]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선택과목 (1)	⑤경제학원론, 노동경제학, 인사소송법 중 1과목[100점]
*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구분	시험과목[배점]	출제범위
제2차시험 (4과목)	필수과목 (3)	①노동법 [150점] 「근로기준법」,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②인사노무관리론 [100점]
		③행정쟁송법 [100점]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선택과목 (1)	④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인사소송법 중 1과목 [100점]
제3차시험	면접시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 노동법은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나. 시험시간

구분	시행일자	교시	입실시간	시험시간	시험과목
제1차 시험	5. 19(토)	-	09:00	09:30 ~ 11:35(125분)	① 노동법(1) ② 노동법(2) ③ 민법 ④ 사회보험법 ⑤ 경제학원론, 노동경제학, 인사소송법 중 1과목
		1	09:00	09:30 ~ 10:45(75분)	① 노동법
제2차 시험	9. 1(토)	2	11:05	11:15 ~ 12:30(75분)	
		3	13:30	13:50 ~ 15:30(100분)	
		1	09:00	09:30 ~ 11:10(100분)	③ 행정쟁송법
	9. 2(일)	2	11:30	11:40 ~ 13:20(100분)	④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인사소송법 중 1과목
제3차 시험		11.10(토) ~ 11.11(일)	-	1인당 10분내외	□ 면접시험

※ 제3차 시험장소 등은 시험시행 5일전(2018.11.5.09:00)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nomu)공고

4. 시험방법

- 제1차시험 :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25문제씩 출제)
- 제2차시험 : 논문형(과목당 3문제씩, 노동법은 4문제 출제)
- 제3차시험 : 면 접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공인노무사법 제3조의5)

나. 결격사유(공인노무사법 제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음

- 1) 미성년자(1999. 11. 22 이후 출생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2018.11.21) 기준임

6.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 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제1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각 과목 40점 이상”이란 선택과목의 경우 응시자의 조정 전 점수와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란 필수과목 점수와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한 선택과목 점수를 합한 총득점의 평균이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제1차시험의 선택과목에 있어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선택과목에 대한 응시자의 점수는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아래 1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는 아래 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함
 1. $\{(응시자의 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 \div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 \times 10\} + \text{전체 필수과목 점수의 평균}$
 2.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2 \text{의 총합계} \div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 의 거듭제곱근

나. 제2차 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다만, 제2차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한 인원수의 범위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를 결정

- 시험과목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 단서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이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와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조정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이란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출한 총득점이 각 과목 만점 총합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해당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全) 답안지(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아래 1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하되, 시험과목 중 노동법은 조정한 점수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득점으로 함.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아래 2의 산식에 따라 산출

1. $\{(\text{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 - \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 \div \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 \times 10\} + 50$
2. $\{(\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 \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2 \text{의 총합계} \div (\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 의 거듭제곱근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8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함.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7. 시험의 일부(과목)면제

가. 시험의 일부면제

- 제1차시험 면제 : 2017년 제26회 제1차시험 합격자
- 제1차 및 제2차시험 면제 : 2017년 제26회 제2차시험 합격자

나. 시험의 일부 과목면제

1) 제1차시험 일부 과목면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 면제
- ① 고용노동부(1981년 4월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31일 이

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1996년 8월7일 이전의 해운항만청, 2008년 2월 28일 이전의 해양수산부 및 2013년 3월22일 이전의 국토해양부)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 ③ 조합원 100명 이상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1항 및2항에 따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근무한 경력
- ④ 상근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 지도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2) 제1차시험 전 과목과 제2차시험 일부 과목 면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 과목 면제
 - 고용노동부(1981년 4월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 ①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②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 경력산정 기준일 :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2018. 11. 21)

< 시험의 일부(과목)면제 해당자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제출기간 : 해당시험 원서 접수기간
 - 1차시험 일부과목 면제 : 4. 16(월)09:00 ~ 4. 25(수) 17:00
 - 1차시험 전과목과 2차시험 일부과목 면제 : 7. 9(월)09:00~7. 18(수) 17:00
- ※ 증빙서류 제출·심사후에만 시험의 일부 면제자로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증빙서류는 마감일 17:00까지 제출(등기우편 제출시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공단 21개 소속기관 자격시험(2팀 9. 면제서류 및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처 참조)
- 제출서류 : ① 경력증명서(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유형별로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서류) ② 시험일부면제신청서(공단 소정양식)
 - ※ 경력확인 등을 위해 4대 보험 납입증명서 등을 필요시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유형별 제출서류 및 시험일부면제신청서 서식은 국가자격시험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nomu) → 자료실에 다운로드 활용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시험의 일부과목 면제를 위한 유효한 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 제출한 경우 별도 서류제출없이 응시원서 접수 가능(단, 동일한 면제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서류 제출자의 시험일부면제 여부는 경력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요건 미충족시 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을 수 없음**

< 전년도 1차 또는 2차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안내 >

- 전년도 1차 또는 2차시험 합격자는 1차 또는 2차시험 면제자로 2·3차 원서접수 기간내(7. 9 ~ 7. 18)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 가능(별도제출서류는 없음)
- 전년도 1차 또는 2차시험 합격자가 1차시험에 응시를 원할 경우 1차시험 원서접수 기간내 접수 가능 (기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가 2018년 시험에서도 유효할 경우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시 별도로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8. 영어시험성적표 제출

- 제1차시험 영어과목은 다음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이하 영어시험성적표라 한다)로 대체

○ 기준점수

시험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일반응시자	530	197	71	700	625	65(level-2)	625
청각장애인	352	131	-	350	375	43(level-2)	375

※ 청각장애인(2, 3급)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 점수를 인정.

다만,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원서접수기관으로 제출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영어시험성적표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규시험의 성적만 인정
- 영어시험 성적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단, 인터넷에서 출력한 원본도 가능)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16년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2018. 4. 25)까지 성적 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영어시험성적표 접수안내>

- 제출기간 : 2018. 4. 9(월) 09:00 ~ 4. 25(수) 17:00
- ※ 유효한 영어시험성적표 제출 후에만 제1차시험 원서접수 가능
- ※ 등기우편 제출시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공단 21개 소속기관 자격시험(2)팀 (9. 면제서류 및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처 참조)
- 제출서류 : ① 영어시험성적표제출신청서(공단소정양식) ② 영어시험성적표(원본) ③ 성적동의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표를 제출하는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 제출
- ※ 「영어시험성적표제출신청서」 및 「성적확인동의서」는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home)-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제출방법 : 오프라인(방문 또는 등기우편) 또는 온라인(토익, G-TELP시험에 한함)
- ※ 2018년도부터 토익 및 G-TELP시험에 한하여 온라인(큐넷-공인노무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어학성적 제출 - 하단의 제출하기)으로 **상시 제출 가능[공지사항 다이렉트 제출 참조]**
- ※ 제출순서 : 큐넷 회원가입 →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승인 → 인터넷 원서접수
- ※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가 2018년 시험에서도 유효할 경우 제1차시험 원서접수 시 별도로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 다른 자격(공단 시행)으로 기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가 2018년 시험에서도 유효할 경우 제1차시험 원서접수 시 별도의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없이 영어시험성적표제출면제신청서를 작성 제출

★ 영어시험성적표 진위여부 조회결과 영어시험성적표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성적표 제출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음

9. 면제서류 및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우편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서울지역본부] 자격시험2팀	025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	2137-0551
강원지사 자격시험팀	24408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033	248-8511
강원동부지사 자격시험팀	25440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033	650-5717
[부산지역본부] 자격시험2팀	46519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	330-1964
울산지사 자격시험팀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증가로 347	052	220-3211
경남지사 자격시험팀	51519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055	212-7241
[대구지역본부] 자격시험2팀	4270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053	580-2354
경북지사 자격시험팀	36616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054	840-3034
경북동부지사 자격시험팀	37580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054	230-3202
[충북지역본부] 자격시험2팀	2163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032	820-8672
경기지사 자격시험팀	1662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031	249-1212
경기북부지사 자격시험팀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031	850-9126
경기동부지사 자격시험팀	1331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031	750-6222
[광주지역본부] 자격시험2팀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	970-1771
전북지사 자격시험팀	5485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063	210-9227
전남지사 자격시험팀	57948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061	720-8535
전남서부지사 자격시험팀	58604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061	288-3324
제주지사 자격시험팀	63220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064	729-0714
[대전지역본부] 자격시험2팀	35000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042	580-9152
충북지사 자격시험팀	28456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길 81	043	279-9042
충남지사 자격시험팀	3108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041	620-7636

※ 지역본부 및 지사 위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www.hrdkorea.or.kr) 참고

10.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제1차시험 : 2018. 4. 16(월) 09:00 ~ 4. 25(수) 18:00
- 제2차·제3차시험 : 2018. 7. 9(월) 09:00 ~ 7. 18(수) 18:00
- ※ 제2차·제3차시험 동시접수 (3차시험만 응시 하는 사람도 위 기간 내에 원서접수 하여야 함)
- ※ 원서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단, 공휴일에는 원서접수가 안 될 수도 있음)

나. 접수방법

-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nomu)」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원서 접수시 사진은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여권 사진을 그림파일(JPG)로 업로드

다. 장애인 등 편의제공

-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 등은 원서접수시 해당 장애유형 및 편의요청 사항을 선택하고,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 장애인 편의제공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인노무사홈페이지 참조

라.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 30,000원
 - 제2차 시험 : 45,000원(제3차 시험 재 응시자 포함)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 결제 수수료는 공단이 부담

마. 수수료 환불

○ 수수료 환불 기준

-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의 전부
- 시험 시행일의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의 전부
- 시험 시행일의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의 100분의 50
- ※ 단, 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바. 수험표 교부

-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 출력 가능)

사.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내에는 취소 후 재 접수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접수 불가

<제3차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공고 안내>

■ 제3차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는 2018.11.5.(월) 09:00 「공인노무사 홈페이지」에 공고

11. 제1차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가. 공개 및 접수기간 : 2018. 5. 19(토) 14:00 ~ 5. 25(금) 18:00 <7일간>

- 나. 공개 및 접수방법 :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같음
 - ※ 시험문제지는 시행 후 수험자에게 지급

12.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합격자 발표

- 제1차시험 : 2018. 6. 20 (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 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득점 공개
 - ※ 선택과목은 조정 산출한 점수만 공개(원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제2차시험 : 2018. 10. 31 (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 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득점 공개
 - ※ 전과목 조정 산출한 점수만 공개(원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제3차시험 : 2018. 11. 21 (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 여부, 득점 공개
- 발표방법
 - 큐넷-공인노무사 홈페이지 : 60일간
 - ARS (1666-0100) : 4일간 (개인별 합·불 여부만 안내)

나.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

- 신청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신청방법 : 큐넷-공인노무사 홈페이지

다. 자격증 발급

- 자격증 발급기관 : 한국공인노무사회 (02-6293-6115)

13. 수험자 유의사항

객·주관식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 개인정보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안내 및 합격알림 가능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08:40에 부착
 - ※ 매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중·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단, 중·고등학교 학생증의 경우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기되어있는 경우에만 인정)
 3. 필기·필답형 시험전일 18시부터 [공인노무사홈페이지-마이페이지-진행중인 접수내역]에서 시험실을 사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단, 시험실 입실은 시험당일 08시부터 가능
 4.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7.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전자계산기를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8.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시험 무효처리

9.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스마트 워치 등)]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스마트폰의 비행기 탑승모드 허용안함)

11.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3.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객관식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카드에 배부된 문제지를 확인하여 형별을 기재 마킹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

정색 필기구 미사용 등)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등)로 판독불능 등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주관식(단답형, 논술형)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한 가지 필기구만을 계속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필기구, 2가지 이상 색 혼합사용 등으로 작성한 답안은 0점 처리)
3. 답안을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표시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답안지에 수험번호와 성명 기재란 외에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답안지 전체를 0점 처리합니다.

면접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자별 제3차시험의 시험일시 및 장소는 **시험시행 5일전(2018. 11. 5(월) 09:00) 국가자격시험 공인노무사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는 일시·장소 및 입실시간을 정확하게 확인 후 신분증과 수험표를 소지하고 시험당일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장 수험자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입실시간 이후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하므로 시간 내 도착하여야 함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중·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단, 중·고등학교 학생증의 경우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기되어있는

경우에만 인정)

3. 소속회사 근무복, 군복, 교복 등 제복(유니폼)을 착용하고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모든 의복 포함)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nomu>)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